



## 석달윤 등 간첩조작의혹 사건

### 【결정사안】

6.25 전쟁기에 월북한 박양민의 외조카 김정인, 외종 10촌 석달윤, 여동생 박공심, 동향 친구 장제영 등이 박양민과 접선하여 간첩행위 및 불고지, 편의제공 하였다는 혐의로 사형, 무기징역 등 중형으로 처벌한 인권유린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규명한 사례.

### 【결정요지】

1. 이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남파간첩 오○○의 진술에 의거해 6·25 전쟁기에 월북한 박양민의 남파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980. 5.경부터 박양민의 친족에 대해 내사를 벌여 1980. 8. 초중순경부터 피해자들을 불법연행 한 후,

2.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40일에서 55일 동안 변호인 및 가족들과의 접견이 차단된 불법감금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자백을 받아 간첩사건으로 처벌하도록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조사과정에서 구타, 물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가했을 높은 개연성이 인정된다.

3. 위 불법구금은 형법상 불법감금죄를 구성하며,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0조가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4.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지검은 피해자들이 중앙정보부의 고문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한 것이며 간첩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호소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수사과정의 불법행위 및 혐의사실을 철저히 밝히지 않고, 오히려 혐의를 부인하는 피해자를 구속하였으며, 중정의 자백에 기초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서울지법에 기소하였다.

5. 서울지법은 피해자들이 공판에서 장기간의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자백한 것이며 간첩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증인들도 중정에서 고문에 의해 허위진술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으나 이를 외면하고, 임의성 없는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을 근거로 증거재판주의에 위반하여 피해자들에게 사형, 무기징역 등의 중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 또한 서울고법은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라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외면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였으며, 대법원은 사형 등 중형을 유지하여 결국 생명권까지 박탈한 결과

를 초래함으로써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법부의 책무를 저버렸다.

6. 경찰, 검찰, 법원은 수사과정에서의 불법 감금 및 가혹행위, 자백에 의존한 무리한 기소 및 증거재판주의에 위반한 유죄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7. 국가는 위법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전 문】

【사 건】 라-154호 석달윤 등 간첩조작 의혹 사건

【신청인】 석달윤 외 3명

【결정일】 2007. 6. 26.

## 【주 문】

위 사건에 대하여 이유 기재와 같이 진실이 규명되었음을 결정한다.

## 【이 유】

### I. 사건의 개요

#### 1. 사건 요지

1980. 8. 중앙정보부(이하 중정보라 한다)는 남파공작원 오○○을 통하여 박양민이라는 공작원이 남파되어 공작활동을 하였다는 내용을 북한에서 전해 들은 바 있다는 막연한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위 박양민의 고향 진도를 중심으로 내사를 하여 위 박양민의 외조카 김정인, 고종 10촌 석달윤, 친구 장제영, 여동생 박공심 등을 강제연행하여 불법감금한 상태에서 조사 중 자백을 받아,

김정인(당시 41세)을 남파된 박양민을 따라 1964년, 1966년, 1971년 각 북한 지역으로 탈출한 후 다시 잠입하고, 1966년에는 조선노동당에 입당하고, 1971년에는 진도군 임회면 일대 해안경비상황을 보고하는 등 간첩행위를 하고, 1977년 탈출 후 잠입한 부(父) 김양오와 회합하였다는 혐의로,<sup>1)</sup>

1) 구반공법 제6조제4항 제3항의 탈출 잠입죄, 구국가보안법 제2조 및 형법 제99조의 군사목적수행과 일반이적죄, 구반공법 제5조



석달윤(당시 46세)을 1966년 박양민과 접선하고 공작금을 수수하고, 1974년 전남 진도 마을 해안가 경비상황 등을 박양민에게 보고하고, 박양민이 장제영을 포섭하도록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혐의로,<sup>2)</sup>

박공심(당시 41세)을 1975년 박양민, 1975년 탈출후 잠입한 김양오와 회합하고, 1978년 김양오와 상면하고도 수사기관에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혐의로,<sup>3)</sup>

위 박양민의 고향친구인 장제영(당시 52세)을 1974년 박양민이 박○○, 박○○을 포섭 하는데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로,<sup>4)</sup>

1980. 10. 7. 서울지방검찰청(이하 서울지검이라 한다)에 사건을 송치하였고, 서울지검은 이들을 조사한 후, 1980. 10. 25. 기소하였다.

재판 결과, 1981. 1. 30. 서울형사지방법원(이하 서울지법이라 한다)은 김정인에게 사형, 석달윤에게 무기징역, 박공심에게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 6월, 장제영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이 각각 불복, 항소하였으나, 1981. 6. 4.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이라 한다)은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피고인 박공심은 상소권을 포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고, 김정인, 석달윤, 장제영은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1981. 9. 22. 대법원은 김정인의 위 간첩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98조제1항의 구성요건에 관한 해석에 위법이 있다고 파기환송하였고, 석달윤 및 장제영에 대하여는 상고를 기각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고법에서 검찰은 김정인의 적용법조 중 형법 제98조제1항(간첩)을 형법 제99조(일반이적)로 변경하였고, 1982. 2. 2.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김정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이후 김정인은 상고하였으나, 1982. 5. 25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김정인은 1985. 10. 31. 사형이 집행되었고, 석달윤은 1998. 8. 15. 가석방으로 출소하였고, 박공심 및 장제영은 각 만기 출소하였다.

위 사건에 대하여 석달윤, 박공심, 장제영, 한화자(김정인의 처)는 2006. 1. 20.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제1항의 회합통신죄를 각각 적용.

2) 구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8조제1항의 간첩방조죄, 구반공법에 7조 편의제공죄.

3) 구반공법 제5조제1항의 회합통신죄, 구반공법 제8조 불고지죄.

4) 구반공법에 제7조 편의제공죄.

## II. 의혹사항

### 1. 불법감금 여부

중정 수사관들이 김정인은 1980. 8. 초순경, 장제영은 1980. 8. 12.경, 석달윤은 1980. 8. 21.경, 박공심은 1980. 8. 24.경 각각 강제 연행하여, 1980. 9. 30.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36일 내지 50일 동안 이들을 불법감금하여 수사를 하였는지 여부.

### 2. 고문, 가혹행위 여부

중정 수사관들이 장기간 불법감금상태인 피해자들에게 자백을 강요하면서 구타,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 3. 범죄사실의 허위조작 여부

김정인이 1964년 입북 후 1966년, 1971년에도 두 차례 입북하였는지 여부, 석달윤이 1965년부터 1974년까지 박양민과 접선, 진도군 임희면 일대의 해안 경비 상황을 알려주었는지 여부, 박공심이 김정인, 김양오가 박양민과 함께 입북 후 돌아와 활동 중임을 인지하고도 수사정보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는지 여부, 석달윤, 장제영이 박양민이 박○○, 박○○를 포섭하는데 필요한 연락과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 III. 진실규명조사의 근거와 목적

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는 진실규명 대상의 하나로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공권력에 의하여 저질러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인 생명권 침해, 불법체포·감금, 고문·가혹행위 및 허위조작의혹사건 등을 의미하며,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인 경우에는 기본법상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수사관들에 의해 장기간 불법감금된 채 가혹행위를 당하고 사건이 허위조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기본법이 정한 진실규명 대상 사건에 해당하고, 수사관들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가 확인되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2조가



정하는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진실규명 대상에 속한다.

따라서 진실화해위원회는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허위조작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에 대하여 기본법 제4장에 따른 적절한 조치 등을 권고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2006. 12. 19. 이 사건에 대하여 조사개시 결정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 IV. 진실규명 조사 방법과 경과

신청인들이 제출한 사건신청서 등의 검토를 거쳐 수사 및 재판기록을 분석한 후, 피해자, 참고인 및 수사관에 대한 진술청취를 실시하였다.

### 1. 자료조사

- 서울지검 기록관리과 보존 수사기록 : 9권 3,960매, 공판기록 1,000매

중앙정보부 수사착수 경위 및 수사과정, 피해자들의 검찰에서의 자백,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을 분석, 검토하였다.

- 국가기록원 보유자료

재소자 신분카드, 각 심급별 판결문, 형집행지휘서, 동태사항, 시찰표, 접견표, 병력표 등을 검토 하였다.

- 국가정보원 보유자료

중정의 내사자료 및 그 당시 중정 수사관 인적사항을 검토하였다.

### 2. 진술청취

• 피해자 등 신청인 4명,<sup>5)</sup> 참고인 18명,<sup>6)</sup> 수사관 6명<sup>7)</sup>에 대한 진술청취를 통해 수사과정,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여부, 자백의 경위, 증언변복 이유 등을 확인하였다. 참고인 박○○, 박○○, 수사관 이○○, 김○○, 수사검사 변○○에 대해서는 모두 사망하여 진술

5) 피해자 석달윤에 대하여 진술조서 2회, 대질조서 1회, 피해자 박공심에 대하여 진술조서 2회, 대질조서 2회, 피해자 장제영 진술조서 1회, 한화자(사형당한 김정인의 처)에 대하여 진술조서 1회 및 대질조서 1회를 실시하였다.

6) 참고인 장○○, 참고인 장○○, 참고인 석○○, 참고인 김○○, 참고인 김○○(일명 김○○), 참고인 김○○, 참고인 박○○, 참고인 석○○, 참고인 구○○, 참고인 박○○, 참고인 서○○, 참고인 최○○, 참고인 김○○, 참고인 이○○, 참고인 김정수, 참고인 김○○, 참고인 황○○, 참고인 이○○에 대해서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실 및 현지출장을 통하여 진술조서를 작성 하였다.

7) 중정 전직 수사관 김○○, 수사관 안○○, 수사관 안○○, 수사관 서○○, 수사관 이○○, 수사관 유○○을 진실화해위원회로 소환하여 피해자 석달윤, 피해자 박공심, 피해자 한화자와 각각 대질조사를 하였다.

청취를 하지 못하였다.

## V. 조사 결과

### 1. 사건발생의 경위

#### 가. 관련자들의 관계

중정 수사보고에 의하면, 박양민은 1970. 11. 1. 중정에서 작성한 월북자 명단에 기재되어 있고, 호적부에 의하면 부 박○○와 모 석○○의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김정인은 부 김양오와 모 박두례의 아들이자 박양민의 외조카이다. 박두례는 박양민의 이복누나이자 박공심의 언니이다. 박양민은 석달윤과는 고종 10촌간이며, 장제영과는 고향 친구이다.

#### 나. 피해자들의 환경

이 사건 입건 당시인 1980. 8. 중순경 당시 전남 진도군 임회면 죽림리는 아직 다리가 없어 육지로 나오려면 배를 이용하여 해남으로 나와야 하던 시기로, 김정인은 한화자와 결혼하여 부모를 모시고 어업에 종사하다가 분가하여 전남 진도에서 낭장망 어장을 운영하였고, 석달윤은 전남 진도에서 해태양식을 하였고, 박공심은 경기도 부평에서 친정어머니 석도심을 부양하였고, 장제영은 진도읍내에서 화성의원을 운영한 의사였다.

#### 다. 수사착수의 경위

이 사건은 남파간첩 오○○의 진술에서부터 시작되었다.<sup>8)</sup> 오○○은 중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서 “나와 박양민의 동서인 김○○는 친구였는데, 김○○로부터 ‘박양민이 1967년 초에 695부대에서 밀봉교육을 받고 서울에 침투하여 6·25 전쟁 전 대학동창인 서울 모 경찰서장을 포섭하였고 그 이후 박양민은 연락부 선전과장이 되었다’ 라는 말을 들은 바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중정 1국 1단 수사3과 박○○ 등이 오○○의 위 진술서를 근거로<sup>9)</sup> 1980. 5. 경부터 본격적인 내사를 시작하여<sup>10)</sup> 1980. 8. 박양민과 연고가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 이들을 연행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다.

8) 국정원 회신문 2006. 11. 16.

9) 김○○ 진술청취 2007. 1. 30.; 안○○ 진술청취 2007. 2. 14.; 유○○ 진술청취 2007. 2. 22.

10) 박공심 인자동행보고 1980. 9. 24. 1,358쪽.



## 2. 수사 및 재판과정

### 가. 중정의 수사과정

중정은 김정인으로부터 자백을 받아 1980. 9. 23. 제1회 진술서를 작성한 것을 시작으로 9. 24. 제2회 진술서, 9. 25.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9. 26. 제3회 진술서, 9. 27.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9. 28. 제4회 진술서, 9. 29.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등 총 7회에 걸쳐 조서를 작성하였고,

석달윤으로부터 자백을 받아 1980. 9. 25. 제1회 진술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것을 시작으로 9. 27. 제2회 진술서, 9. 28.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9. 29. 제3회 진술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0. 4. 제4회 진술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등 총 8회에 걸쳐 조서를 작성하였고,

박공심으로부터 자백을 받아 1980. 9. 25. 제1회 진술서를 작성한 것을 시작으로 9. 26. 제2회 진술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9. 27.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9. 28.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등 총 5회에 걸쳐 조서를 작성하였고,

장제영으로부터 자백을 받아 1980. 9. 24. 제1회 진술서를 작성한 것을 시작으로 9. 25.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9. 26. 제2회 진술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9. 27. 제3회 진술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9. 28.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등 총 7회에 걸쳐 조서를 작성하였고,

박두레로부터 자백을 받아 1980. 9. 27.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것을 시작으로 9. 29.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0. 2.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등 총 3회에 걸쳐 조서를 작성하였고,

김정수로부터 자백을 받아 9. 26. 제1회 진술서, 9. 27.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9. 28. 제2회 진술서, 9. 30.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등 총 4회에 걸쳐 조서를 작성하였고,

한화자로부터 자백을 받아 9. 27.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9. 29.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0. 2.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등 총 3회에 걸쳐 조서를 작성하였다.

1980. 9. 30. 중정은 김정인, 석달윤, 박공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1980. 10. 6. 서울구치소에 이들을 수감한 다음,

1980. 10. 7. 서울지검에 김정인, 석달윤, 박공심, 장제영, 박두레, 김정수, 한화자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다.<sup>11)</sup>

11) 김양오(김정인의 부)는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 이유 불기소의견인.

1981. 1. 19. 경 중정은 기자회견을 하여, “고첩간첩 3개망 15명 검거, 동갑계, 위친계 등 위장 10년 간 암약”이라고 발표하였고, 그 다음날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중앙일간지는 1면 톱기사로 위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sup>12)</sup>

### 나. 서울지방법검찰청의 수사

서울지검은 중정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김정인에 대해 1980. 10. 8.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0. 11.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980. 10. 13.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0. 16. 진술서, 10. 17.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등 총 5회에 걸쳐 조서를 작성하였고,

석달윤에 대해 1980. 10. 10.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0. 13. 자술서, 10. 14.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0. 17.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등 총 4회에 걸쳐 조서를 작성하였고,

박공심에 대해 1980. 10. 10.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0. 14. 진술서, 10. 18.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0. 24.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등 총 4회에 걸쳐 조서를 작성하였고,

장제영이 1980. 10. 15.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혐의사실을 부인하자, 1980. 10. 18.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10. 18. 서울구치소에 수감한 후, 자백을 받아 10. 23.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서울지검은 1980. 10. 16. 한화자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김정수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10. 17. 박두레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한화자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김정수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1980. 10. 6. 중정은 장제영, 한화자, 박두레, 김정수를 석방하고, 사건을 서울지검에 송치하였는데, 서울지검은 1980. 10. 18. 장제영을 다시 구속하였고, 1980. 10. 25. 서울지법에 김정인, 석달윤, 박공심, 장제영을 기소하였으며, 한화자, 박두레, 김정수를 각 기소유예 처분하였다.(검사 변진우)

### 다. 재판과정

#### 1) 서울지방법원

서울지법은 1980. 12. 8. 제1차 공판을 시작<sup>13)</sup>으로 12. 15. 제2차, 12. 22. 제3차, 1981. 1. 10. 제4차 공판을 거쳐 1. 30. 제5차 공판에서 판결을 선고(재판장 부장판사 노승두, 판사 이흥복, 여상규)하였다.

12) 동아일보 1981. 1. 20.자, 조선일보 1981. 1. 20.자.

13) 1차 공판은 변론 연기됨.





1980. 12. 8. 제1차 공판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변론연기신청으로 재판이 연기되어 1980. 12. 15. 제2차 공판이 열렸다. 1981. 1. 30. 서울지법은 김정인에게 사형, 석달윤에게 무기징역, 박공심에게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 6월, 장제영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각 선고하였다.

## 2) 서울고등법원

김정인, 석달윤, 박공심, 장제영 및 검사(석달윤에 한하여)는 서울고법에 항소하였고, 서울고법은 5차례의 공판을 걸쳐 1981. 6. 4. 항소를 모두 기각(재판장 최종영, 판사 김선봉, 윤규한)하였다.

## 3) 대법원

김정인, 석달윤, 장제영은 상고를 하였고, 대법원은 1981. 9. 22. 김정인에 대하여 2심 판결을 파기하여 서울고법에 환송하고, 석달윤, 장제영에 대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재판장 대법원판사 이성렬, 대법원판사 이일규, 이회창)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석달윤은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 1998. 8. 15. 가석방 출소하였고, 박공심, 장제영은 만기복역 후 출소하였다.

대법원은 “형법 제98조제1항의 간첩행위는 기밀에 속한 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 수집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인 바, 김정인의 판시사실 중 이미 수집하였거나 지득하고 있는 사항을 입북하여 북괴공작원에게 보고한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98조제1항의 간첩죄 구성요건에 관한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고, 기밀탐지수집행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여부를 밝혀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김정인에 대한 서울고법 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 4) 서울고등법원

환송심에서 검찰은 김정인의 간첩행위에 대한 적용법조를 형법 제98조 1항에서 형법 제99조(일반이적)로 변경하였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뒤 11차례의 공판을 거쳐 1982. 2. 2. 김정인에게 사형을 선고(재판장 부장판사 김문호, 판사 이상원 이상경)하였다.

## 5) 대법원

위 판결에 대해 김정인은 대법원에 재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82. 5. 25. 상고를 기각

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이후 김정인은 재심개시청구를 하였지만 기각되었고, 1985. 10. 31. 사형이 집행되었다.

### 3. 수사과정의 위법성

#### 가. 불법감금 여부

##### 1) 수사기록 검토

중정 1980. 9. 23. 자 인지동행보고에 의하면 김정인, 석달윤은 1980. 9. 23. 박공심은 1980. 8. 24. 장제영은 1980. 8. 12. 연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김정인, 석달윤, 박공심에 대한 구속영장은 1980. 9. 30. 발부되었다.<sup>14)</sup>

1980. 9. 23. 김정인은 제1회 진술서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1980. 9. 25. 석달윤은 제1회 진술서에서 혐의사실 대부분을 자백하였으며, 1980. 9. 25. 박공심은 제1회 진술서 및 9. 26. 제2회 진술서에서 혐의사실을 자세하게 자백하였다. 1980. 9. 24. 장제영은 제1회 진술서에서 혐의사실 대부분을 자백하였다.

##### 2) 공판기록 검토

석달윤은 서울지법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중정에서 47일간 조사를 받는 동안 고문 등이 심하여 거짓 자백하였다고 주장하였고<sup>15)</sup> 항소, 상고이유서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서, “중정 151호실에서 2주일, 138호실에서 3주일, 153호실에서 2주일 동안 감금되어 고문을 당했고,<sup>16)</sup> 다른 피고인 보다 10일 늦게 연행되어 47일 동안 조사받았다”고 주장하였다.<sup>17)</sup>

장제영은 중정에서 56일 동안 조사를 받고 전에 앓던 정신분열증이 도질까 두려워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sup>18)</sup> 항소이유서에서 “56일간 불법구속 후 석방되어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던 점을 참작해야한다”고 진술하였고,<sup>19)</sup> 중정에서 56일간 조사 받은 후 석달윤 등의 증인이 될 것을 조건으로 석방되었다가 검찰에서 이를 부인하여 재구속되었다고 진술하였다.<sup>20)</sup>

14) 장제영 구속영장은 1980. 10. 18. 발부되었다.

15) 서울지방법원 제출 석달윤 탄원서 1981. 1. 15.

16) 석달윤 항소이유서 1981. 3. 27.

17) 석달윤 상고이유서 1981. 7. 18.

18) 서울지방법원 2차공판 1980. 12. 15.

19) 장제영 항소이유서 1981. 4. 6.(변호사 박영호 작성)



### 3) 진실화해위원회 진술

#### 가) 피해자

김정인의 아들 김철홍은 “아버지 김정인과 어머니 한화자를 비롯하여 우리가족 모두가 연행된 것은 내가 목포 소재 마리아회 고등학교 1학년 때인 17살 때였고, 1980. 7. 말경 방학을 하여 본가인 진도에 내려가 있었는데, 1980. 8. 경에 집 앞 선착장을 보니 지프차 2대가 저희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급히 집으로 쫓아 들어가 보니 수사관으로 보이는 2명의 남자가 아버지 김정인을 양쪽에서 잡고 차에 태우는데, 아버지는 손이 앞으로 모아져 있었고 수건으로 손을 감싸진 채였다. 아마 수갑을 채운 뒤 수건으로 보이지 않게 감싼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가 연행된 것은 증조할아버지 제사가 양력으로 8. 20.인데 아버지를 비롯하여 우리가족 모두가 연행된 것이 증조할아버지 제사 약 열흘 전쯤이었고, 아버지는 그 이후로 보지 못하였다. 어머니 한화자, 할머니 박두레, 작은 아버지 김정수는 약 두 달만에 석방이 되었는데 어머니는 석방 된 후 진도로 내려가지 못하고 목포에 있는 고모집에서 계속해서 병상에 누워 있었고 골병이 날 때 먹은 한방약을 구해 복용 하였으며, 어머니는 다음 해가 되어서야 겨우 움직일 수가 있어 1981년에 진도에 내려가 어장 등을 정리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김정인의 처 한화자는 “1980. 8. 초순경 남편 김정인을 연행하여 진도경찰서에 하룻밤을 재우고, 다음날 지프차로 남편을 태워 와 나, 시어머니 박두레, 시동생 김정수를 같이 태워 중정 남산분실로 연행해 갔으며, 약 한달 이상 고문하여 허위자백하자 1980. 9. 중순경 풀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석달윤은 “1980. 8. 21. 오전 11시경 낯선 남자 2, 3명에게 연행되어 진도경찰서에서 하룻밤 보낸 뒤 다음날 아침 5, 6시경 고속버스 편으로 서울로 압송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중정 남산분실이었고, 이미 박공심, 장제영 등이 연행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박공심은 “1980. 8. 12. 오전 8시경 부평 소재 집에 남자 2, 3명이 나타나 ‘잠깐 조사할 일이 있으니 가자. 2, 3시간 이면 된다’라고 하여 따라갔는데 알고 보니 중정 남산분실이었고, 그날부터 감금되어 고문을 당했다”고 진술하였고,

장제영은 “진도읍내에서 화성의원을 경영하던 중, 1980. 8. 14. 새벽 5시경 낯선 남자 3, 4명이 집으로 찾아 와 ‘조사할 일이 있으니 잠시 가자’라고 하여,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

20) 서울고등법원 1차공판 1981. 5. 6.

하고 서울로 연행이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장제영의 사촌동생 장제철은 “1980년 5·18 관련으로 구속되었다가 1980. 8. 중순경에 석방되었는데, 고향인 진도로 내려와 사촌형인 장제영이 중정에 끌려간 사실을 알았다”라고 진술하였다.

#### 나) 수사관

당시 수사관 김○○는 “나는 1980년 무더운 여름에 장제영을 연행하였고 처음 장제영을 담당하다가, 일주일 후 쯤 석달윤을 담당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서○○는 “이 수사가 다른 사건에 비해서 상당히 길어졌던 기억밖에는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1980년 여름 진도로 내려가 직원 일부는 낚시꾼을 가장하고 일부직원은 수영객을 가장하여 약 3, 4일간 이들의 동태를 살피다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김정인을 연행하였고, 약 40일간 진도에 머물면서 무인포스트 등의 현장 확인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 다) 참고인

진실화해위원회는 피해자들의 연행과정을 목격했거나 들은 바 있는 진도경찰서 정보과 소속 김○○ 경사, 석달윤의 아들 석권호, 김정인의 아들 김철홍, 장제영의 사촌동생 장제철, 진도군 임회면 죽림리 마을주민 김○○, 주○○, 김○○, 김○○ 등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당시 진도경찰서 정보과 소속 김○○ 경사는<sup>21)</sup> 석달윤에 대한 연행일시가 중정 수사기록에는 1980. 9. 23.로 기재된 것에 대해 “그 것은 중정이 석달윤에 대한 연행일시를 감추기 위해서 조작한 것으로 석달윤이 연행된 시기는 한여름 더위가 아직 가시지 않은 시기였고, 석달윤은 아직 반팔 차림으로 유치장에 있었다. 석달윤이 연행되기 약 7일 전쯤에 김정인 가족 모두가 중정에 잡혀간 사실은 진도마을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석달윤의 아들인 석권호는 “아버지의 연행날자를 잊지 않기 위해서 통장비밀번호도 “0821”로 하였으며, 아버지가 끌려간 때는 유채꽃을 낚으로 베는 시기로 한참 더운 여름이었다”라고 진술을 하였고,

마을주민 주○○, 김○○, 김○○는 사실확인서에서 “1980. 8. 중순 한참 더운 여름경에 석달윤이 연행된 것은 사실이고, 석달윤이 연행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석달윤이 위 시기에 연행되어 간 것은 동네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1) 1999. 3. 30. 진도경찰서 정보과장으로 정년퇴직.



#### 4) 소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진술서 등을 반복하여 작성하면서 피해자 전원이 스스로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의 범죄사실들이 최초 진술서에 순서대로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수사기록상으로 박공심은 1980. 8. 24.에, 장제영은 8. 12.에 연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석달윤은 1980. 8. 21.에, 박공심은 8. 12.에 연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김창용은 석달윤이 연행되기 일주일 전에 김정인이 연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장제영은 8. 14.에 연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관들도 1980. 5. 내사를 시작하여 1980년 한여름에 피해자들을 연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40일 이상 상당기간 조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참고인들 또한 일관되게 1980. 8. 한여름, 학생들의 방학시기에 피해자들이 연행되었음을 목격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김정인, 석달윤, 박공심의 구속영장은 9. 30. 발부되었고, 장제영, 박두레, 한화자, 김정수 등은 10. 6. 검찰에 송치될 때 석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들 및 참고인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김정인은 약 47일, 석달윤 약 40일, 박공심은 약 49일, 장제영은 약 55일 동안 불법감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불법구금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하고,<sup>22)</sup>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0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 나. 가혹행위

#### 1) 수사기록 검토

장제영은 검찰 조사시 “혐의사실은 중정 수사관들의 엄문에 못 이겨 허위자백한 것으로, 석달윤이 1974년 박양민을 만나도록 주선했다고 자백하여 자신도 허위 자백했다”고 진술하였다.<sup>23)</sup>

22) 형법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①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3) 서울지검 제1회 피의자신문 1980. 10. 15.

## 2) 공판기록 검토

김정인은 서울지법 공판에서 “검찰에서 자백한 것은 또 고문이 있을까봐 허위자백하였다”고 진술하였고,<sup>24)</sup>

석달윤은 서울지법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중정 조사관 6명(2인 3조)에게 47일간 조사받으면서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허위자백하였고, 검찰조사시 중정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할 경우 검찰청 15층에 올라가 더 무서운 고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였고,<sup>25)</sup>

서울고법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박양민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중정에서 고문으로 인해 허위자백한 것이고, 검찰에서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하였다고 주장했으나 검사가 일축해 버렸다”고 주장하였다.<sup>26)</sup>

장제영은 서울지법 공판에서 “중정에서 56일간 고문을 받아 정신분열증이 재발할 것 같아 허위자백하였다”고 진술하였다.<sup>27)</sup>

박두레는 서울지법 공판에서 “중정에서 며느리와 아들이 맞는 것을 보고 허위자백했고, 검사 앞에서도 애들이 또 맞을까 두려워 허위자백하였다”고 진술하였고,<sup>28)</sup> 김정수는 서울지법 공판에서 “검찰에서도 고문이 있을까 두려워 허위자백 하였다”고 진술하였다.<sup>29)</sup>

## 3) 진실화해위원회 진술

### 가) 피해자

석달윤은 “연행된 첫날 양손에 수갑을 채우고 손과 발을 묶은 뒤 몽둥이를 끼워 책상사이에 매달리게 한 뒤 물고문을 하였다. 혐의사실을 부인하자 200, 300와트 밝기의 전구를 눈앞에 켜놓고 전구를 계속해서 쳐다보게 하였다. 전구를 계속해서 쳐다보니 정신이 빙빙 돌면서 미칠 것만 같았다. 그리고 밤새도록 추궁을 하면서 이를 동안 한숨도 못 자게 하였다. 25일부터는 담뱃불로 무릎 아래에서 발목위까지 지저대기, 송곳으로 허벅지 찌르기 등 고문을 했다. 그러다 수사관들이 전선을 연결시키는 모습을 보고 전기고문을 당하면 정말 죽을 것 같아 모든 것을 시인하겠다고 하였다. 그 다음날부터 자필진술서를 매일 오

24) 서울지법 2차공판 1980. 12. 15.

25) 석달윤 탄원서 1981. 1. 15.

26) 석달윤 항소이유서 1981. 3. 27.

27) 서울지법 2차공판 1980. 12. 15.

28) 서울지법 4차공판 박두레 증인신문 1981. 1. 10.

29) 서울지법 4차공판 김정수 증인신문 1981. 1. 10.



전과 오후에 한 벌씩 써내고 한자라도 틀리면 사정없이 몽둥이 세례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박공심은 “주먹으로 뺨을 수 십대 맞고 수 차례 기절한 적이 있고, 밤낮으로 잠을 재우지 않아 미칠 지경에 이르렀고, 옥조 같은 곳에 물을 가득 받아 놓고 수사관 2명에서 내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옥조에 쳐박으려고 하여 필사적으로 발버둥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장제영은 “수사관이 무릎 뒤에 각목을 끼우고 사정없이 무릎을 짓밟는 고문을 하였고, 몽둥이로 때리는 것은 기본이고, 반복해서 잠을 안 재우며 추궁하면서 세뇌교육을 시키기도 모르게 박양민을 만난 것처럼 느껴서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김정인의 처 한화자는 “손목이 뒤로 묶인 채 물속에 머리를 집어넣는 고문을 당했고, 각목을 뒷무릎에 끼우고 꿇어앉히게 하는 고문을 당했고, 구두로 구타당하는 고문을 당했다”, “샤워장 같은 곳에 저를 세워 두고 옆방에서 남편이 고문 받으면서 지르는 비명소리를 듣게 하면서 협박했다”, “하루는 나를 남편 김정인이 있는 옆방으로 데리고 갔는데, 문 틈으로 남편 얼굴이 보였다. 중정 직원이 샤워기를 틀어 내 얼굴에 물을 뿌리기 시작했다. 나는 질식할 것 같아 비명을 질렀다. 이를 본 남편 김정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중정 직원에게 애원하기를 ‘내가 모든 것을 뒤집어쓰고 갈 터이니 우리 가족은 제발 살려 달라. 내 처는 나한테 시집온 죄밖에 없다고 하면서 애원을 했다’ 나도 울고 남편도 울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중정 1단 1국 3과 소속 수사관 19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입수하여, 수사관들의 사진을 제시하고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수사관을 지목하게 하였던 바, 석달윤은 이○○(사망), 김○○를 지목하였고, 박공심은 서○○, 안○○, 안○○을 지목하였다.

#### 나) 수사관

중정 수사관 김○○은 “석달윤의 자백에 의해 신문조서만 작성했을 뿐이며, 석달윤을 가혹행위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서○○은 “당시 수사 3과로 파견을 나간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안○○은 “당시 수사 3과에 근무한 것은 맞지만 박공심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유○○은 “당시 수사가 시작되자 진도에 2회에 걸쳐 보름가량 내려가 있었고, 서울에 올라와서는 박공심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다) 참고인

당시 전주교도소 교도관 구○○은 “1981년 당시 전주교도소 보안과에서 수감자들의 상담과 계호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는데, 석달윤을 불러 상담을 해보면 의자에 바로 앉지 못하고 엉거주춤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 있어 제가 석달윤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중정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고문을 당하여 허리를 잘 쓰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석달윤을 부축하여 약 10여회 이상 허리 치료를 위해 교도소내 의무과에 데리고 간 적이 있고, 다른 직원도 수십 차례 석달윤을 부축하여 교도소내 의무과로 데려간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당시 분위기가 신분장에 상담 사실을 기재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전주교도소 교도관 박○는, “석달윤은 전주교도소 입소 당시부터 허리를 잘 쓰지 못하여 내가 석달윤을 부축하여 교도소내 의무과로 약 10여 차례 이상 데리고 간 적이 있다. 당시 석달윤에게 왜 허리가 아프냐고 물어보면 중정에서 조사 받으면서 고문을 당한 휴유증이라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 4) 소결

피해자들은 중정에서 구타, 물고문 등 고문을 당하면서 허위 자백하였다고 서울지법 공판에서부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수사기록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이 10~15년 이상 넘은 일을 일시, 장소, 대화내용까지 상세하게 시간 순서대로 자백하는 내용의 진술서들을 반복하여 작성한 점,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가혹행위를 한 수사관을 정확히 지목한 점, 석달윤의 고문 휴유증에 대한 교도관들의 진술, 당시 조사를 받았던 장소의 상태나 가혹행위 등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라는 점, 피해자들의 가혹행위 상황이 유사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사관들이 부인하는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가혹행위 등 강압적인 수사를 받고 자백하였을 개연성이 많다고 인정된다.

### 4. 범죄사실의 허위조작 여부

#### 가. 탈출잠입 및 일반이적 여부

##### 1) 판결 범죄사실

김정인은 1964. 5. 중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납파된 박양민과 상면하고, 이북방문을 제의 받고 즉석에서 응낙하고, 2일 후 북한지역 해수에 상륙한 다음, 부락경비상황과 어업실태





에 관해 구두 설명한 후, 5. 하순 공작금품으로 라디오 구입자금 금 1만원, 난수표 1조, 암호문 1조, 불온책자 5권, 박양민으로부터 석도심에게 전해달라는 금지환 1개를 각 수령하고, 진도군 임회면 죽림리 맥수해안으로 잠입하여,<sup>30)</sup> 반국가단체로부터 간첩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해 복귀를 왕래하면서 간첩활동을 하여 오던 중,

① 1966. 7. 하순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북한에서 잠입한 박양민과 접선, 박양민으로부터 재차 입북 제의를 받고 이를 응락, 1차 입북당시와 같은 해상경로로 북상 2일 후 해주 지역해안에 도착, 상륙함으로써 반국가단체 지령을 받기위해 탈출하고,

② 1966. 7. 조선노동당에 입당함으로서 반국가단체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이 된 다음, 친목계를 조직, 확대하여 대상자를 포섭하여 지하조직을 강화하라, 진도군 일대 경비상황과 인심동향을 수집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공작금품 10만원, 에이쓰리 수신용 라디오 1대, 난수표 1조, 암호문 1조, 불온책자 5권을 수수한 다음, 1966. 8. 초 진도군 임회면 죽림리 맥수해안에 상륙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잠입하고,

③ 1971. 10. 하순 피고인의 본가에서 박양민을 접선 이북에 한 번 더 가자는 권유를 받고 이를 응락하고, 2일 후 해주 지역 해안에 도착 상륙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기위해 탈출하고,

④ 평양부근 초대소에 4일 간 밀봉수용되어 경부고속도로가 잘되어 있어 비행기가 있을 수도 있고, 시양골 맥수와 비지낭골에 경비초소가 없다는 내용을 보고함으로써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고,

⑤ 1971. 10. 하순 입북시와 같은 경로로 남하하여 2일 후 진도군 임회면 맥수해상에 상륙함으로써, 반국가단체 지령을 받아 잠입하고,

⑥ 1977. 6. 중순 피고인의 본가에서 모 박두례로부터 부 김양오가 박양민과 함께 이북에 갔다는 말을 들은 다음, 동년 7. 중순 피고인 본가에서 김양오와 접선하여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였다.

판결은 김정인의 위 범죄사실 ①, ②, ③, ⑤에 대해 구반공법 제6조제4항 제3항의 탈출 잠입죄를, 위 ④에 대해 구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9조의 군사목적수행과 일반이적죄를, 위 ⑥에 대해 구반공법 제5조제1항의 회합통신죄를 각각 적용하였다.

30) 모두사실에 기재된 1964. 5. 경 탈출·잠입은 김정인이 시인하고 있는데, 당시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았다.

## 2) 수사기록 검토

김정인은 위 혐의사실에 대해 중정에서 모두 자백하였고, 서울지검에서도 모두 시인하였다.

한화자는 서울지검 조사에서 위 ①, ②, ③, ⑤와 같이 탈출·잠입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sup>31)</sup> 김정인의 동생 김정수는 서울지검 조사에서 김정인의 위 ①, ② 탈출·잠입 사실은 알고 있으나, ③, ⑤의 탈출·잠입사실은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sup>32)</sup> 박두레는 서울지검 조사에서 위 ①, ②, ③, ⑤와 같이 탈출·잠입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sup>33)</sup>

설○○<sup>34)</sup>는 중앙정보부 진술에서 1972년경부터 김정인이 라디오를 여러 번 수리해간 사실은 있으나, 수리해간 라디오가 일제쓰니 라디오였는지, 그 라디오를 다른 라디오로 교환해 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sup>35)</sup>

## 3) 공판기록 검토

김정인은 서울지법의 공판에서 위 ① 및 ②의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위 ②중 조선노동당 입당 부분 및 위 ③, ④, ⑤, ⑥의 혐의사실을 부인하였고, 항소이유서 및 서울고법의 공판기일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하였다.

김정인은 항소이유서에서 판결 모두사실에 대해 “1964. 5. 중순경 처음 보는 외삼촌 박양민을 따라 이북에 한번 간 것이 전부이고, 그것도 박양민이 일본가는 고깃배라고 하면서 가자고 하여 처음에는 가지 않겠다고 하자, 박양민이 내 팔을 강제로 낚아 채 끌려가 다시피 하였고, 대문밖에 무장을 한 청년이 총부리를 옆구리에 들이대며 조용히 하라고 하여 할 수없이 해안가로 가서 이북 가는 배를 타게 되었고, 이북에 머무는 동안 박양민에게 제발 하루라도 빨리 나를 집으로 보내 달라도 애원을 하였다. 그 이후는 나는 박양민을 본 적이 없고 오로지 고기잡는 일에 몰두하고 그 일을 잊고 지냈다”고 주장하였다.

1981. 5. 6. 서울고법 공판에서 변호인의 질문에 김정인은 “1964. 5. 중순경 박양민을 따라 한번 딱 이북을 갔다”고 진술하였고, 변호인이 김정인에게 “변호인이 피고인을 구치소로 처음 접견을 갔을 때, 피고인은 이북에 두 번 다녀왔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게 된 어떤 특별한 사정이라도 있었는가”라고 묻자, 김정인은 “저는 그 때 변호인인 사

31) 서울지검 한화자 피의자신문조서 1980. 10. 17.

32) 서울지검 김정수 피의자신문조서 1980. 10. 16.

33) 서울지검 박두레 피의자신문조서 1980. 10. 17.

34) 김정인이 에이쓰리용 라디오를 여러번 수리했다는 진도군 석교리 대영소리사 김영주.

35) 중앙정보부 설○○ 진술서 1980. 9. 28.



실을 모르고 또 수사기관에서 조사차 나온 사람인줄 알고 조사가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웠으므로 본의 아니게 이북에 두 번 갔었다고 진술 하였다. 압수물로 잡혀 있는 금반지도 제가 목포시내에 있는 금은방에서 구입하여 제 처 한화자에게 준 것이다”라고 진술했다.

증인 김정수는 서울지법 공판에서 “중정에서는 고문에 의해 김정인이 이북에 갔다왔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김정인이 위 ①, ②, ③, ⑤와 같이 탈출·잠입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sup>36)</sup> 증인 박두레도 서울지법 공판에서는 “중정에서는 며느리와 아들이 맞는 것을 보고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위 ①, ②, ③, ⑤와 같이 김정인이 탈출·잠입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sup>37)</sup>

증인 소○○은 서울고법 공판기일에서 ③, ⑤와 관련해 “김정인을 1969. 6.부터 알고 지냈고, 1973년부터 김정인과 어장을 동업한 바 어장철은 2월부터 10월까지이며, 해태양식은 음력 8월 중순부터 익년 2월까지인데, 혼자는 어장일을 볼 수 없고 둘이 하루도 빠질 수 없고, 김정인이 15일 동안 동네를 떠났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sup>38)</sup>

증인 오○○은 서울고법 공판기일에서 “김정인은 1970. 7. 14. 어장을 매수하였고, 김정인과 이웃이며 어장을 같이 동업한 바 김정인이 15일 가랑 집을 비웠다면 자신이 알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sup>39)</sup>

모두사실에 적시된 금반지 1개에 대해서, 김정인은 항소이유서에서 “그 금반지는 1970년경 내가 처인 한화자에게 목포시내에서 사준 금반지이지 결코 이북에게 가져온 것이 아니며, 압수물로 잡혀 있는 라디오는 이북에서 가져온 것도 아니고 1980년 당시만 하여도 집집마다 라디오는 누구나 한 대씩 가지고 있었는데 중정에서는 그 라디오를 압수하여 증거물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주장하였다.

#### 4) 진실화해위원회 진술

김정인의 처 한화자는 “우리 남편은 가족을 사랑하는 우직한 남편이었다. 남편 김정인은 간첩활동을 한 것이 전혀 없고 오로지 고기를 많이 잡아 처자식 먹여 살리는데 급급한 착한 사람이었다. 이 일로 우리 가족은 풍비박산이 났으며, 더 이상 진도에서 살지 못하고 목포에서 숨어 살았다. 나도 중정에 끌려가 약 2개월간 불법감금 상태에서 죽지 않을 만큼 맞았다”라고 진술하였다.

36) 서울지법 4차공판 김정수 증인신문 1981. 1. 10.

37) 서울지법 4차공판 박두레 증인신문 1981. 1. 10.

38) 서울고법 9차공판 소○○ 증인신문 1981. 12. 29.

39) 서울고법 10차공판 오○○ 증인신문 1982. 1. 19.

김정수는 “1980. 8. 중순경 김정인과 함께 연행되어 5, 6일 동안 중정 수사관 김○○, 한○○, 김○○ 등에게 잠 안 재우기, 구타 등의 고문을 당하여 형님인 김정인이 이북에 갔다 왔다고 허위진술했다”고 진술하였다.

모두사실에 적시된 금반지 1개에 대해서, 한화자는 “우리가 결혼 할 때는 남편도 가난했고 우리 집도 가난해서 반지 하나 못해주고 결혼을 하였는데, 남편은 이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는지 형편이 조금 나아지자 1970년 초반 옆집 아줌마인 ○○이 엄마(이○○)와 어구장비를 사려고 목포 시내에 나갔다가, 금반지 1개를 사서 내 손가락에 끼워 줬고, 1977년 경 위 금반지가 낡고 디자인이 구식이라 목포시내에서 다시 수리한 적이 있고, 1980. 8. 중순경 중정에 끌려갔을 때 중정 직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사건에 증거물이 필요하다고 수근 거렸고, 그런 다음 중정에서 내가 끼고 있던 금반지와 목걸이를 빼앗아 갔는데, 나중에 보니 그것이 압수물로 잡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이○○은 “1970년 경 옆집에 살던 김정인과 함께 어구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목포 시내를 나갔다가, 김정인이 결혼 10년이 넘도록 마누라한테 금반지도 한 개 못 해주었다고 푸념하여, 당일 김정인과 이○○이 목포시내 상호불상 금은방을 방문하여, 한화자의 금반지를 1개 구입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최○○은 “1977년 경으로 기억을 하는데, 초등학교 친구인 김○○가 결혼을 한다며 자기 처 될 사람과 처갓집 식구들을 데리고 내가 운영하는 금은방을 찾아온 것은 사실이고, 한화자가 자신이 끼고 있던 금반지가 낡고 디자인이 구식이라면서 수리를 의뢰한 것도 사실이며, 내기 기억하기에는 한화자의 금반지는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자들 금반지였으며, 이 일로 1980. 9. 24. 중정 목포출장소에 끌려가 중정 직원이 손바닥으로 따귀를 때리면서 ‘내가 수리했던 한화자 금반지가 국내산이냐 외국산이냐’ 라고 하면서 억박지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 김○○은 “내가 1977년 김정인의 여동생인 김○○와 결혼을 하였는데, 마침 내 친구 최○○가 목포시내에서 금은방을 운영하고 있어, 내 처 될 사람과 처갓집 식구들과 함께 친구가 운영하는 금은방을 찾아가 우리 결혼 패물을 다 맞추고 난 후, 한화자가 자신이 끼고 있던 금반지를 친구 최○○에게 수리해 달라고 맡긴 것은 사실이고, 그 당시 나도 정신이 없어 그 금반지가 어떤 모양인지는 정확히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 5) 소결

1966. 7. 탈출·잠입(위 ①, ②), 1971. 10. 탈출·잠입(위 ③, ⑤), 군사상 이익공여(위 ④), 1977. 6. 회합통신(위 ⑥)에 대해서 김정인은 중정과 서울지검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그 자백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기간 불법감금 상태에서 고문, 가혹행위로 인한 것이고, 이러한 강압상태가 서울지검 조사에까지 이어졌다고 인정되므로 자백에 대한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김정인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시된 박두레, 한화자, 김정수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해 이들은 중정에서 고문을 받아 허위자백한 것이라며 서울지법 공판에서 부인하였다.

김정인은 서울지법 공판에서 위 ①, ②(1966. 7. 탈출·잠입) 혐의를 자백하였으나, 위 ③, ④, ⑤, ⑥의 혐의를 부인하였다.

서울고법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소○○, 오○○은 위 ③, ⑤(탈출, 잠입)에 대해 1970년경 김정인이 어장을 매수하여 동업을 하였는데, 어장을 하는 동안 김정인이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거나, 15일 동안 어장을 비운 일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결국 1971. 10. 탈출·잠입(위 ③, ⑤), 군사상 이익공여(위 ④), 1977. 6. 회합통신(위 ⑥)의 혐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1966. 7. 탈출·잠입(위 ①, ②)에 대해서는 김정인은 서울지법 공판에서 혐의를 자백하였으나, 항소이유서 및 서울고법 공판기일에 이를 부인하고 있고, 서울지법에서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데 보강증거가 없고, 증인 김정수 및 박두레는 당시 김정인이 입북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어 이 부분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sup>40)</sup>

## 나. 석달윤의 간첩 방조 여부

### 1) 판결 범죄사실

석달윤은 1965. 4. 경 군산시 해망동 버스정류장에서 박양민을 상면, 박양민이 간첩으로 남파되었음을 인지하고, 1965. 8. 경 전북 이리 소재 박공심을 찾아가 박양민의 생존소식을 알려주고,

1966. 7. 하순 전북 옥구군 미면 간척공사장 제3공구 사무실에서 박양민과 접선, 박양민

40) 형사소송법 제310조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으로부터 금 10만원을 교부받는 등 박양민에게 포섭되어 동인의 지령에 따라 활동하여 오던 중,

① 1966. 9. 하순 전북 옥구군 미면 간척공사장 제 1공구 사무실 뒷산에서 박양민과 접선, 간척공사장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공사장 공사가 끝나면 고향으로 내려가 조직활동을 잘하여 보라는 지시와 함께 금 15만원을 교부 받음으로써 남파되어 암약중인 박양민의 간첩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간첩을 방조하고,

② 1970. 6. 경 (진도군 임회면 죽림리) 마을 앞 시양골 냇가에서 박양민과 접선하고, 1971. 5. 경 진도군 의신면 활곡리 소재 박양민의 본가에서 박양민과 접선하고, 1972. 9. 경 전시 박양민의 본가에서 박양민과 접선, 박양민으로부터 “이곳 해안경비 상황을 파악하여 알려달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응락하고, 1972. 11. 말 진도군 임회면 죽림리 부락앞 김 양식장에서 김○○로부터 부락앞 해안경비 상황을 문의하여 설명을 들은 다음, 1973. 5. 경 피고인 집 앞에서 정○○으로부터 박양민이 보낸 노란봉투 1개를 교부받고 진도군 임회면 죽림리 시양골 소당바위에서 박양민과 접선, 김○○에게 수집해 두었던 해안경비 상황을 알려줌으로써 박양민의 간첩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간첩을 방조하였다.

판결은 석달윤의 위 범죄사실 ①, ②에 대해 구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8조제1항의 간첩방조죄를 적용하였다.

## 2) 수사기록 검토

석달윤은 위 범죄사실에 대해 증정에서 모두 자백하였고, 서울지검에서도 모두 시인하였다.

위 범죄사실 관련, 판결이 증거로 채택한 김○○, 서○○, 정○○<sup>41)</sup>의 검찰진술과 황○○의 증정진술은 다음과 같다.

위 범죄사실 ②와 관련 검찰진술에서, 김○○은 “1972. 11. 말 석달윤이 부락 앞 경비상황이 어떠냐고 묻기에 해안경비초소의 방위병의 근무현황에 대해 설명해 준 일이 있다”고 진술하였다.<sup>42)</sup>

위 범죄사실 ②와 관련 증거보전 절차에서 정○○은 “1973. 5. 낮 모르는 30대 청년으로부터 노란봉투를 석달윤에게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석달윤에게 전해 준 일이 있다”고 진술하였다.<sup>43)</sup>

41) 정○○의 진술은 증거보전신청에 의한 진술임.

42) 서울지검 김○○ 진술조서 1980. 10. 17.



서○○의 중정진술은 모두사실에 관한 것으로 “1965. 8. 경 석달윤과 박공심을 찾아간 일은 있으나, 두 사람이 이야기하도록 자리를 비워준 기억은 없고, 박양민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sup>44)</sup>

중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서 황○○은 “1973. 9. 경 친족 9명으로 친인척계를 조직한 적은 있으나, 석달윤이 생활고에 대한 이야기 외에 특별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sup>45)</sup>

### 3) 공판기록 검토

석달윤은 서울지법 공판에서 위 범죄사실 ①, ②에 대해 부인하였고<sup>46)</sup> 탄원서에서 “검찰조사에서 중정진술과 다른 진술을 할 경우 검찰청 15층에서 더 혹독한 고문을 당할 것이라는 협박을 받았고, 검사에게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라고 혐의 사실을 부인했으나 꾸중만 들었다”고 주장하였고,<sup>47)</sup> 서울고법 공판에서 “박○○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중정진술은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었다”고 진술하였다.<sup>48)</sup>

향소이유서에서 석달윤은 김○○의 진술에 대해 “부락 앞 경비초소는 동네 부락민이 공동작업으로 손수 만든 것이고, 아들이 초소에서 방위병으로 근무했고, 마을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중정에서 물어본 사람을 말해야 된다고 해서 동갑인 김○○에게 들은 것 같다고 진술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고,

정○○의 진술에 대해 “중정조사 과정에서 말해야 된다고 해서 친구 정○○이 노란봉투를 전해주었다고 진술했으나, 정○○이 준 봉투는 수협이 양식자금을 상환하라는 독촉장이었다”고 주장하였다.<sup>49)</sup>

### 4) 진실화해위원회 진술

#### 가) 피해자 진술

석달윤은 “중정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다 결국 전기고문까지 하려고 하여 죽을 것만 같은 공포감에 박양민을 한차례 만났다고 허위자백했는데 이후 8차례나 만난 것으로 되어

43) 80 초 1013 증인신문청구사건 정○○ 증인신문 1980. 10. 17.

44) 서울지검 서○○ 진술조서 1980. 10. 17.

45) 황○○은 석달윤의 처 조카 사위임, 중앙정보부 황○○ 진술서 1980. 10. 8.

46) 서울지법 2차공판 1980. 12. 15.

47) 석달윤 탄원서 1980. 1. 15.

48) 서울고법 3차공판 1981. 5. 27.

49) 석달윤 향소이유서 1981. 3. 27.

버렸다”고 진술하였다.

석달윤은 “김정인을 은밀히 만나, 김정인으로부터 박양민을 따라 이북에 갔는데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더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김정인 집은 불과 약 200미터 이내 거리에 있어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시로 마주치고 하는데 굳이 사람들 눈도 있는 방풍림 같은 곳에서 위와 같은 은밀한 대화를 나눴겠느냐. 중정에서 상식 밖의 각본을 만든 것이다”, “1972. 11. 김○○로부터 진도 해안가 경비상황을 물어보고 이를 파악한 후 박양민 보고했다 라고 되어 있으나, 그 경비초소는 동네 사람들이 동원되어 벽돌을 찍어 만든 초소로서 위 초소의 경비상황과 초소 내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나를 비롯하여 동네 사람이면 거의 대부분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며, 우리 만아들도 그 초소에서 방위생활을 마쳤는데 내가 정말 간첩이라면 왜 방위초소 상황을 동네 친구인 김○○에게 물었겠느냐”, “1973. 5. 동네주민 정○○으로부터 노란봉투를 전해 받고 당일 바로 박양민과 몰래 접선을 하였고, 박양민과 접선 후 석달윤은 그동안 김○○ 등으로부터 수집한 진도 해안가 경비상황을 박양민에게 보고 하였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정○○이 나한테 노란봉투를 전해 주었다면 그것은 그 당시 진도읍내 수산업협동조합에서 내가 어업과 농업에 필요한 물품을 가져다 사용하고 그 물품대금을 갚지 못하였는데, 수협직원이 동네어귀에서 정○○을 만나 이 봉투를 석달윤에게 좀 전해 주라면서 봉투를 건네준 것을 가지고 중정에서 나한테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며, 만약 박양민이 정말 나와 접선하고 싶었다면 밤에 몰래 우리집을 찾아오면 될 것이지 간첩이라는 자가 백주 대낮에 동네 사람인 정○○에게 접선하자는 봉투를 건네 주었겠느냐, 이것은 완전 상식밖의 조작극이다”라고 진술하였다.

#### 나) 참고인 진술<sup>50)</sup>

김○○는 “중정과 서울지검에서 ‘그 당시 석달윤이 나한테 진도 해안가 경비상황을 물어본 적도 없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당시 석달윤이 나한테 진도 해안가 경비상황을 물어본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어떻게 하여 수사기록에 그러한 것이 기재가 되어 있는지 지금도 영문을 모르겠다. 초등학교 3학년의 학력으로 한글을 더듬더듬 알뿐으로 그 당시 조서를 읽어보지도 않고 무인을 찍으라고 하여 수사관이 시키는 대로 찍었다”고 진술하였다.

50) 변○○ 검사, 정○○은 사망하여 진술을 청취하지 못하였다.





### 5) 소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석달윤은 중정과 서울지검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그 자백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기간 불법감금 상태에서 고문, 가혹행위로 인한 것이고, 이러한 강압상태는 서울지검 조사에까지 이어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자백에 대한 임의성이 없다.

범죄사실 ②와 관련하여 김○○는 검찰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며, 낯선 남자로부터 노란 봉투를 받아 석달윤에게 전달하였다는 정○○의 증언만으로는 그 입증이 부족하다.

따라서 석달윤의 위 ①, ②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 다. 석달윤, 장제영의 편의제공 여부

#### 1) 판결 범죄사실

석달윤은 ③ 1974. 4. 초 전시 박양민의 본가에서 박양민과 접선, 박양민으로부터 장제영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익일 박양민의 본가에서 박양민이 장제영을 포섭, 장제영에게 박○○, 박○○도 한번 만날 수 있도록 설득하여 달라는 부탁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줌으로써, 박양민이 장제영, 박○○, 박○○을 포섭하는 편의를 제공하였다. 위 ③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이 있는 아래 장제영의 편의제공 범죄사실과 함께 검토하기로 한다.

장제영은 ① 1974. 4.경 피고인의 병원에서 석달윤을 상면, 석달윤으로부터 그 부근 간이주점에서 박양민을 만나보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응낙하고, 동일 진도군 의신면 활곡리 소재 박양민 본가에서 박양민을 상면, 박양민으로부터 박○○, 박○○을 만나도록 주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응낙하고,

② 1974. 여름 피고인의 병원 앞 상점에서 박○○을 상면, 박양민과 회합하도록 권유하고, 동년 6월 석달윤에게 그간 접촉상황을 알려주고,

③ 1974. 가을 피고인의 병원 앞 서씨주점에서 박○○를 상면, 박○○에게 박양민과 회합하도록 권유하고, 동년 10. 초순 석달윤에게 그간 접촉상황을 알려줌으로써, 박양민, 석달윤이 박○○, 박○○를 만나 그들을 포섭하는데 필요한 연락과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하였다.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반공법에 제7조 편의제공죄를 적용하였다.

## 2) 수사기록 검토

석달윤은 위 범죄사실에 대해 증정에서 모두 자백하였고, 서울지검에서도 모두 시인하였다. 장제영은 증정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서울지검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증정에서의 자백은 수사관의 강요에 못 이겨 허위 자백한 것이라며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하다 구속되었고, 이후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시인하였다.

판결은 박○○, 박○○의 검찰진술과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하였다. 박○○은 1974. 8. 9월경 장제영으로부터 박양민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박○○을 만나보라는 권유와 함께, 석달윤을 찾아가 보라고 한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고,<sup>51)</sup> 박양민은 1974년 여름 장제영이 박양민을 만난 일이 있는데 박양민을 만나보고 싶으면 석달윤을 찾아가라고 한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다.<sup>52)</sup>

## 3) 공판기록 검토

석달윤은 서울지법 공판에서 장제영을 박양민과 만나도록 주선 해준 바 없다고 혐의내용을 부인하였고, 항소이유서에서 “장제영은 진도 화성의원 원장으로 아이의 귀가 아파 병원에 2차례 찾아간 것 외에는 만난 일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sup>53)</sup> 상고이유서에서 “장제영을 박양민과 접선시켜 편의제공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처음 조사할 때는 1972년으로 했다가 조사 끝에 1974년으로 변경한 것이다”고 주장하였다.<sup>54)</sup>

장제영은 서울지법 공판에서 “증정에서 56일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고문을 받아 허위자백한 것이고, 검찰에서는 혐의사실을 부인하다 구속되고 보니 증정의 고문이 생각나 허위자백하였다”고 진술하였다.<sup>55)</sup> 항소이유서에서 “수사기관에서도 별로 중하다고 보지 않았고, 그 정상을 보아 있을 수 있는 행위였다고 보았기 때문에 56일간 불법구속 수사 후 석방하여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던 점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혐의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1972년에 있었던 일이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라며 신문기사를 제출하였다.<sup>56)</sup>

1981. 1. 19. 증정이 기자회견을 열어 진도간첩단 사건 외 2건을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51) 서울지검 박○○ 진술조서 1980. 10. 16.

52) 서울지검 박○○ 진술조서 1980. 10. 18.

53) 석달윤 항소이유서 1981. 3. 27.

54) 석달윤 상고이유서 1981. 7. 18.

55) 서울지법 2차공판 1980. 12. 15.

56) 장제영 항소이유서 1981. 4. 6.



중앙 일간지가 이를 신문지상에 1면 톱기사로 일제히 보도 하였는데, 그 당시 중정 발표문을 보면 “의사 장제영은 1972. 4. 경에 남파간첩 박양민과 접선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장제영의 범행일시가 1972. 4.경으로 공소시효가 지나 중정에서 다른 피의자들을 검찰로 송치하면서 장제영을 1980. 10. 6. 석방한 것으로 보인다.

장제영은 서울고법 공판에서 1972년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였고, 중정에서 56일간 조사 받은 끝에 석달윤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하면서 석방해 주었다가 검찰에서 부인하자 구속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sup>57)</sup>

상고이유서에서 “증인 박○○가 발생연도를 72년인지 74년인지 기억하지 못하고, 증거로 제출한 안기부의 보도자료를 인용한 신문기사에도 장제영의 혐의사실이 72년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였고, “처음에 1972년으로 하라고 했다가, 석방될 무렵 조 과장이 1974년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4, 5차례 조서내용을 변경시키면서 다시 적었다”고 주장하였다.<sup>58)</sup>

박○○는 서울고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장제영으로부터 박○○을 만나보라는 권유를 받았으나 시기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sup>59)</sup>

#### 4) 진실화해위원회 진술

##### 가) 피해자 진술

석달윤은 “우리 아이가 아파 진도읍내에 있는 장제영이 운영하는 화성의원을 몇 번 찾아간 것이 전부이다”고 진술하였고,

장제영은 “나와 박양민은 동향으로 한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서울 신촌 소재에서 같이 하숙을 한 적도 있었지만, 6·25 전쟁 이후로는 박양민을 본 사실이 전혀 없다. 중정에서 회유와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정신분열증이 재발할 것 같아, 수사관들이 원하는 대로 진술했다”고 진술하였다.

##### 나) 참고인 진술<sup>60)</sup>

박○○는 1996년 작성한 회고록에서 1980. 8. 15. 전후 중정에 연행되어 50일간 조사를 받으면서, 중정의 가혹행위에 못 이겨 장제영의 혐의를 인정해 주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후 중정직원 두 사람이 와서 가자고 하여 따라가 보니 서울지검이었다. 나는 중정 직원

57) 서울고법 1차공판 1981. 5. 6.

58) 장제영 상고이유서 1981. 7.20.

59) 서울고법 2차공판 박○○ 증인신문 1980. 5.20.

60) 박○○, 박○○는 사망하여 진술을 청취하지 못하였다.

에 안내되어 검사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중정에서 진술한대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중정 직원들이 옆에서 보고 있기 때문이었다. 판사실에 가서 증인선서를 하자고 해 선서까지 마쳤다. ○○이도 나와 마찬가지로 선서를 마친 걸로 알고 있다. 법정에 출두하라고 하여 법정에 갔는데 재판장이 증언을 요구했다. ‘어느 때 그런 말을 들었는지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하고 법정을 빠져 나왔다”고 기술하고 있다.<sup>61)</sup>

당시 택시기사 장○○의 진술에 의하면, “그 당시 장제영 선생님은 저하고는 먼 친척이라 얼굴은 알고 지냈으며 길거리에서 가끔씩 만나면 인사를 드리고 하였다. 진도는 조그마한 동네라 거의 서로가 얼굴을 알고 지내며, 장제영 선생님은 평소에 위낙 검소하여 택시를 타지 않는 분이였다. 위급한 환자가 있으면 택시를 이용하여 마을로 간 적이 약 2~3번 가량 있는데 나는 의사선생님 진료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장 선생님을 태우고 되돌아 왔다. 그 이유는 1980년 당시만 하여도 의사라도 차가 없어서 다른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이었다. 제가 알기로는 장제영 선생님이 중정에 끌려가 모진 고문에 더 이상 못 견디고 ‘장○○의 택시를 타고 박양민의 본가에 가서 박양민을 만났다’라고 진술하여, 저도 위 일로 진도읍내에 있는 중정 진도출장소로 쓰이던 평화여관에 불려가 홍역을 치른 적이 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980. 9.경 진도읍내에서 택시를 세워놓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어떤 남자 한명이 다가오더니 ‘장○○이 맞느냐’고 하여 그렇다고 하였더니 다짜고짜 ‘조사할 일이 있으니 같이 가자’ 라고 하여, 나는 ‘무슨 일로 그러냐’고 하자, 그 남자는 마치 때릴 듯이 겁을 주면서 ‘따라와’ 라고 하여, 할 수 없이 따라간 곳이 진도읍내에 있는 평화여관 2층이었다. 저를 연행한 남자는 사라지고 여관에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저를 보더니 ‘나는 중정 직원이다. 당신 중정이 어떤 곳인지 알지. 당신 장○○이 맞아, 당신이 의사 장제영을 택시에 태워 활곡리에 갔지’라고 하여, 나는 겁을 잔뜩 집어 먹은 상태에서 ‘나는 석달윤과 장제영을 택시에 태워 활곡리로 간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하자, ‘너 똑바로 이야기 안하면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약 6시간 가량 추궁하고 괴롭혔다. 나는 그 당시만 하여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굳게 믿어 중정 수사관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사실대로 ‘나는 석달윤과 장제영을 태우고 박양민의 본가인 의신면 활곡리 집을 간 사실이 없다’라고 사실대로 진술하였다. 그러자 중정직원이 각서 한 장을 내밀면서 ‘만약 여기서 조사받은 것은 바깥에서 이야기 하면 너는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다. 너 마누라한테도 말하지 말라. 서울 중정에서 너를 소환할지 모르니 항상 대기하고 있어라’라고 하여, 저는

61) 박○○ 회고록 「내가 걸어온 길·나아갈 길」, 1996. 7.



그 이후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생활을 하였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 이후로는 저를 더 이상 부르지 않았다. 그 당시 평화여관에서 진술조서를 받았는데 진술조서는 약 서너 장 이상이 된 것으로 기억하고 그 조서에 내 무인까지 찍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에는 장○○의 진술조서 자체가 첨부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중정에서는 장길선의 진술서가 석달윤과 장제영의 범죄사실에 불리한 자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여, 아예 진술조서 자체를 수사기록에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5) 소결

석달윤은 위 혐의사실에 대해 중정 및 검찰에서 모두 자백하였다. 장제영은 중정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검찰에서 부인하다 구속된 후 혐의사실을 시인하였다. 위 자백은 모두 강압적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이므로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1심 공판에서 석달윤은 부인하였고, 장제영은 1972년에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중정에서 장제영을 김정인, 석달윤의 혐의사실을 증언해 준다는 조건으로 불구속 송치하였다는 점, 당시 중정이 박양민과의 접선일자를 1972. 4. 경으로 언론에 발표한 점, 검찰에서 제1회 신문시 장제영이 혐의사실을 부인하여 구속된 점, 증인 박○○도 회고록에서 50일간 중정 조사를 받은 끝에 장제영의 혐의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진도택시 기사 장길선의 혐의사실과 다른 진술 및 이 진술서를 수사기록에서 누락시킨 점, 그 후 박○○ 및 박○○이 박양민을 만난 사실도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 마. 박공심의 회합·통신 및 불고지 여부

##### 1) 판결 범죄사실

① 1975. 11. 초순 친정집에서 김정인과 접선, “다음 기회에 이북할 때 외삼촌에게 이모님의 안부를 전하고…”라는 말을 들음으로써 김정인이 계속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지령에 따라,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하고,

② 1975. 12. 초, 1977. 4. 16. 경 경기도 인천시 부평동 피고인의 집에서 김양오와 접선, “어려운 속에서도 훌륭하고 쓸만한 사람들을 사귀도록 노력하라”는 격려와 지시를 받음으로써,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③ 1978. 4 초 피고인의 집 내실에서 김양오와 접선, 김양오로부터 “내가 얼마전 이북에

가서 처남을 만났는데”라는 등의 말을 들음으로써 김양오가 박양민과 함께 북괴로 탈출하였다가 밀봉교육을 받고 다시 북괴로부터 잠입,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계속 활동 중임을 인지하고도 지체 없이 수사정보기관에 신고치 아니하였다.

위 범죄사실 ①, ③에 대해 구반공법 제8조 불고지죄를, 위 ②에 대해 반공법 제5조제1항 회합통신죄를 적용하였다.

## 2) 수사기록 검토

박공심은 위 혐의사실에 대해 중정에서 모두 자백하였고, 서울지검에서도 모두 시인하였다. 김정인의 입북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은 위에서 본바와 같고, 김양오가 입북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김정인의 모 박두레, 동생 김정수, 김정인의 처 한화자는 중정에서 김양오의 입북혐의를 자백하였고, 검찰조사에서 박두레, 김정수가 시인하였으나,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들이 1심 공판에서 부인하였으므로 다른 증거가 없어 김양오의 입북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결은 사법경찰관 작성의 최○○, 정○○, 서○○, 김○○, 한○○, 박○○의 각 진술과 유○○의 진술서를 증거로 채택하였다. 최○○, 정○○, 서○○, 김○○, 한○○의 중정에서의 진술은 모두사실에 관한 진술로 위 혐의사실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 유○○은 중정에서 위 ②와 관련 1976. 3.경 및 1977. 2.경(음력) 김양오, 박두레와 함께 박성제(박두레의 부)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박공심의 집에 찾아간 적은 있으나, 옆방에서 잠이 들어 김양오와 박공심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박○○은 중정에서 위 ③과 관련하여 1978. 2.(음력) 박성제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김양오와 함께 박공심의 집에 찾아갔고, 다음 날 창경원을 구경한 바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김양오가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는 점에 대한 언급은 없고, 단순히 김양오와 함께 갔다는 진술일 뿐이다.

## 3) 공판기록 검토

서울지법 공판에서 박공심은 위 혐의사실 ①, ③ 불고지 부분은 인정하고, ②는 부인하였다. 김정인은 서울지법 공판에서 위 ①을 부인하였다.

## 4) 진실화해위원회 진술

### 가) 피해자 진술

박공심은 “최○○, 정○○, 서○○, 김○○ 등을 사귄 것은 사실이나 박양민의 지령에



의한 것이 아니다. 위 혐의사실 ①, ②, ③과 같이, 김정인, 김양오가 입북했고 이를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모두 조작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5) 소결

위 혐의 사실 ②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①, ③에 대해서는 박공심의 서울지법 공판기일에서의 자백이 있다. ③과 관련해서는 박○○의 중정에서의 단순히 김양오와 함께 간 일이 있다는 진술밖에 없다. 전제사실인 김정인, 김양오가 입북하였다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잠입하여 활동 중이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박공심의 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 VI. 결 론

### 1. 진실규명

이 사건은 중정이 남파간첩 오○○이 북한에서 들었다는 진술에 의거해 6·25 전쟁기에 월북한 박양민을 접선하였을 가능성을 근거로, 1980. 5. 경부터 박양민의 친인척에 대한 내사를 벌여 1980. 8. 중순경부터 피해자들을 강제연행하여 장기간 불법구금하고 강압적 상태에서 자백을 받아 간첩 혐의로 사형, 무기징역 등 중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인권유린 사건이다.

중정 수사관들이 피해자들을 강제연행한 다음,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40일에서 55일 동안 변호인 및 가족들과의 접견이 차단된 불법감금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자백을 받아 간첩사건으로 처벌하도록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조사과정에서 구타, 물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가했을 높은 개연성이 인정된다. 위 불법구금은 형법상 불법감금죄를 구성하며,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0조가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지검은 피해자들이 중앙정보부의 고문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한 것이며, 간첩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호소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수사과정의 불법행위 및 혐의사실을 철저히 밝히지 않고, 오히려 혐의를 부인하는 피해자를 구속하였으며, 중정의 자백에 기초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서울지법에 기소하였다.

서울지법은 피해자들이 공판에서 장기간의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자백한 것이며 간첩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증인들도 중정에서 고문에 의해 허위진

술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으나 이를 외면하고, 임의성 없는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을 근거로 증거재판주의에 위반하여 피해자들에게 사형, 무기징역 등의 중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 또한 서울고법은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라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외면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였으며, 대법원은 사형 등 중형을 유지하여 결국 생명권까지 박탈한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법부의 책무를 저버렸다.

## 2. 권고

기본법 제4장에 따라 국가가 행할 조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국가는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존한 기소 및 사형, 무기징역 등 유죄판결에 대하여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는 위법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